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이 경력경쟁채용 시험등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15조의4 신설).
- 사무총장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·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, 전·현직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되는 경우 그 채용 사실 및 채용 이후 승진 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(안 제15조의3제3항 및 제15조의5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안 제15조의4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‘4급 이상 공무원(정무직 포함)’의 친족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안 제15조의5제1호는 현직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‘4급 이상 공무원

(정무직 포함)'의 친족 채용 사실 및 채용 이후 승진 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

이는 채용 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규정을 둠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.

- 그런데 「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」 [별표2]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에 따르면,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에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외에도 '임기제 공무원(관리관)'인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'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'이 포함되어 있음.¹⁾

「국가공무원법」 상 계급 구분은 일반직공무원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,²⁾ 안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제1호와 같이 규정할 경우

- 1) < 「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」 [별표2]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중 개정안 관련 정원 >

직종 및 직급	정원(명)
정무직 계	3
상임위원(국무위원급)	1
사무총장(국무위원급)	1
사무차장(차관급)	1
일반직 계	2,978
관리관	2
관리관(임기제)	19
이사관 또는 부이사관	25
부이사관 또는 서기관	23
서기관	234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7
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(비서관)	3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22

- 2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(공무원의 구분) ① 국가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.
 ② "경력직공무원"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)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시·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나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등이 신고 또는 보고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음.

이는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신고 대상으로 하고자 한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대상 중 전직 공무원의 범위를 ‘4급 이상(정무직 포함)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’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 제15조의5제2호와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.

- 따라서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안 제15조의5제2호의 보고 대상을 감안하여 안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제1호의 대상에도 “이에 상당하는 직급”을 포함하는 수정의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함.

-
1. 일반직공무원: 기술·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2. 특정직공무원: 법관, 검사, 외무공무원,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, 교육공무원, 군인, 군무원,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, 국가정보원의 직원,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 - ③ "특수경력직공무원"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무직공무원
 - 가.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
 - 나.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(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)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2. 별정직공무원: 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④ (생략)

제4조(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)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, 직군(職群)과 직렬(職列)별로 분류한다. 다만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
2. 연구·지도·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
3.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

<안 제15조의4 등에 대한 수정의견>

대 안	수 정 의 견
제15조의4(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) 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<u>4급 이상의 공무원(정무직을 포함한다)</u> 은 다음 각 호의 사람(이하 “친족”이라 한다)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(이하 “경력경쟁채용시험등”이라 한다)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, 사무총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1. ~ 2. (생략) ② ~ ③ (생략)	제15조의4(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) 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<u>4급 이상(정무직을 포함한다)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</u> 은 다음 각 호의 사람(이하 “친족”이라 한다)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(이하 “경력경쟁채용시험등”이라 한다)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, 사무총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1. ~ 2. (대안과 같음) ② ~ ③ (대안과 같음)
제15조의5(국회 보고) (생략) 1.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<u>4급 이상의 공무원(정무직을 포함한다)의 친족</u> 2. (생략)	제15조의5(국회 보고) (현행과 같음) 1.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<u>4급 이상(정무직을 포함한다)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의 친족</u> 2. (대안과 같음)

○ 그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병 섭)